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타법(「해사안전법」) 분법에 따른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문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현 조문을 삭제(제3조의2, 제3조의3, 제19조제1항 1의3, 1의4호 삭제)

- 1) 국가필수도선사 업무수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제3조의2), 절차 및 방법(제3조의3) 조항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
- 2) 관할 지방청 및 시·도지사에게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제19조제1항 1의3호, 1의4호)

나. 타법(「해사안전법」) 분법에 따른 규정 정비(제1조의2제1항, 별표1 개정)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24.1)됨에 따라 「도선법 시행령」에서의 준용 규정을 정비해 1) ‘위험
화물운반선’의 근거 법령을 변경(「해사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의2제1항)하고, 2) 기존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도선 관련 내용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이관된 점을 고려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함(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도선사면허”를 “따른 도선사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 중 “실무수습자”를 “실무수습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4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호의4)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제1항”으로, “국가필수도선사”를 “도선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도선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4. 6. 30.>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단위: %)
필기 및 면접	1. 법규: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30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曳船)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潮位)정보시스템, 지문(地文)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30
	3. 해상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15
	4. 영어: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25
	계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u>따라 도선사면허</u> 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 ----- ----- <u>따른 도선사면허</u> ----- ----- -----.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1.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나. ----- ----- ----- <u>「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손실보상의 기준) ① <u>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 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u><삭 제></u>
1. <u>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u>	

현행	개정안
<u>기준</u> <u>가.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u> <u>나.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u> <u>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u> <u>3. 사망 또는 부상: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u> <u>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u>	

현행	개정안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u>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u> <u>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 <u>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u> <u>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u>	

현행	개정안
<u>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u> <u>2.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u> <u>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u> <u>⑦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u> <u>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u>	

현행	개정안
<u>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u>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u>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u> 3. (생략) ② (생략)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① ~ ⑤ (생략)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도선 <u>실무수습자</u>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u>실무수습생</u> ----- -----.

현행	개정안
⑦·⑧ (생략)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1의2. (생략) 1의3. <u>법 제6조의3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 종사 명령</u> 1의4. <u>법 제7조 단서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u> 2. ~ 5.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⑦·⑧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① ----- ----- ----- ----- -----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u><삭 제></u> 1의3. <u>법 제7조제1항</u> ----- <u>도선사</u>----- 2.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

현행	개정안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u>3.</u> (생략) ③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u>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u>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71